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차등 적용〉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66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차등 적용(안 제4 조제2항)	3
※ 참고자료	13
1. 정부조달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 개 요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3억 원임.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3.5억 원

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임.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차등 적용(안 제4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매 증대) ① (생 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u>재정경제부장관이</u>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구매 증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u> <u>금액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u> <u>따라 행정안전부장관</u> ----- -----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재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2억 3,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되는 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되지 않고 경쟁입찰을 거쳐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39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 공사: 88억 원
 -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 공사: 88억 3천만 원
 -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
 - 공사: 88억 원
 -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
 - 공사: 88억 3천만 원
 -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원
 - 공사: 88억 원
 -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 공사: 88억 4천만 원
 -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원
 - 공사: 88억 원
 -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 공사: 88억 원
 -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

- 공사: 88억 3천만 원
-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 공사: 88억 원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 공사: 265억 원
 -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7억 9천만 원
 - 공사: 265억 1천만 원
 -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7억 1천만 원
 - 공사: 265억 원
 -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 공사: 265억 1천만 원
 -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7억 9천 5백만 원
 - 공사: 265억 2천만 원
 -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 공사: 265억 1천만 원
 -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 공사: 265억 원
-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기준에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
 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는 공공기관³⁾의 장이 일정한 금액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임.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조달시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금액(2억 3,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 조달시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2억 3,000만원은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이 물품·용역 조달시 국제입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데, 이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2억 3,000만원 이상인 물품·용역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를 차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 등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별로 국제입찰을 거쳐야 하는 물품·용역 조달계약의 하한 금액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2026년 5월 11일 기준 각 금액범위는 국가기관 약 2억 9,700만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약 4억 5,700만원, 기초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9억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300만원임.⁶⁾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물품 및 용역의 국제입찰 대상 기준 금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억 5,000만원,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경우 7억 1,000만원 이상으로, 국가기관에 비해 국제입찰 의무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양허 한도)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5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
-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군
- 2) 대상금액
- 가) 공사 265억 원 이상
- 나) 물품·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6) 이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으로, 기관별 금액기준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은 참고자료 1(p.13) 참조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공사 265억 2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 4백만 원 이상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군
- 2) 대상금액

가) 공사 26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즉, 현행법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거치지 않도록 양허되어 있는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정부조달계약 중에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인 2억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추정가격 2억 3,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은 총 75만 29건으로 전체 조달계약 건수의 약 92.5%에 해당하는 한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20조 4,042억원 규모로 전체 조달 계약 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공조달 계약 건수 현황 ('25년)

(단위 : 건, %)

구분	1억미만	1억이상~ 2.3억미만	2.3억이상~ 3.5억미만	3.5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7.0억미만	7.0억이상	합 계
국가 계약법	105,768 (73.2%)	17,671 (12.2%)	6,642 (4.6%)	4,439 (3.1%)	2,923 (2.0%)	6,973 (4.8%)	144,416
지방 계약법	592,642 (89.0%)	33,948 (5.1%)	13,564 (2.0%)	8,773 (1.3%)	5,867 (0.9%)	11,431 (1.7%)	666,225

* 조달데이터허브 물품·용역 계약현황 자료 참고 (최초계약 0차 기준 집계)
자료 : 중소기업부

공공조달 계약 금액 현황 ('25년)

(단위 : 억원, %)

구분	1억미만	1억이상~ 2.3억미만	2.3억이상~ 3.5억미만	3.5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7.0억미만	7.0억이상	합 계
국가 계약법	28,883 (9.6%)	27,280 (9.0%)	18,753 (6.2%)	18,467 (6.1%)	17,146 (5.7%)	191,345 (63.4%)	301,875
지방 계약법	95,322 (21.1%)	52,557 (11.7%)	38,388 (8.5%)	36,557 (8.1%)	34,496 (7.7%)	193,612 (42.9%)	450,932

* 조달데이터허브 물품·용역 계약현황 자료 참고 (최초계약 0차 기준 집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2025년도 공공조달 계약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하건대,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 상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는 경우 약 13,564건, 3조 8,388억원의 공공조달 계약이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하에서 공공조달 당사자인 기관의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구체적인 법문 표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정부조달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 개요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복수국간 협정*으로, 가입국 정부의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기 위해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로 채택

*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42개국, 1994.4. 협정 체결 → 1997.1. 발효 → 2014.1. 개정협정 발효

- 가입국은 양허금액 이상의 조달계약에 대해 외국 기업 참여를 허용(내국인 대우)하여야 하며, 양허 금액 미만 계약은 협정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우대 등 국내 조달 정책 적법 운용 가능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2년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고시

구분	적용기관	GPA 양허금액(SDR)*	고시 금액
중앙정부 조달기관 (Annex 1. Central Government Entities)	중앙행정 기관	· 물품, 용역 : SDR 130,000 · 공사 : SDR 5,000,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공사 : 88억원 · 물품, 용역 : 2억3,000만원
중앙정부 하위 조달기관 (Annex 2.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광역자치 단체	· 물품, 용역 : SDR 200,000 · 공사 : SDR 15,00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공사 : 265억원 · 물품, 용역 : 3억5,000만원 (단, 자치구, 군은 7억1,000만원)
	기초자치 단체	· 물품, 용역 : SDR 400,000 · 공사 : SDR 15,000,000	
그 밖의 모든 조달기관 (Annex 3. All Other Entities)	공공기관	· 물품, 용역 : SDR 400,000 · 공사 : SDR 15,000,000	-

*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 1SDR = 2282.99원 ('26.05.11 기준)